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2023. 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목 차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25개) ····· 1

2. 4.16세월호참사 분야(32개) ····· 39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22개) ····· 87

분야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26개)

연번	권고사항	대상
1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 사과	대통령
	▸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적극적 피해자 지원	환경부장관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3	▸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4	▸ 신속심사 대상을 全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실시	환경부장관
5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을 구제법에서 구제 및 지원법으로 체제 개정* * 개정시 피해지원 항목확대,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확대, 아동청소년 피해자 간병비 지급 포함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6	▸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건강 조사 · 연구 진행,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7	▸ 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개선 등 전문위원 운영 투명성 제고	환경부장관
8	▸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민·관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9	▸ 디스커버리 제도(소송전 증거 절차) 도입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제도 추진	법무부장관
10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위증죄 관련 조사와 고발 가능	국회의장
11	▸ 실증자료 생산시기 규정 및 미실증 책임 규제규정 도입	공정거래위원장
12	▸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13	▸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위원회	국무총리
14	▸ 화학물질관리본부(환경부) ·위해성평가부(국립환경과학원)로 기존조직 확대 및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독립기관 설립	환경부장관
15	▸ 국가독성연구전담기관 또는 국가독성연구프로그램 마련	과기정통부장관
16	▸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및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17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성격 확립 및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18	▸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19	▸ 효율적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20	▸ 중점관리물질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환경부장관
21	▸ 화학제품의 비관리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 실태조사 실시 및 시장감시 범위 확대	환경부장관
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23	▸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제품 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확대 도입	산업부장관
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25	▸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 국민연금 ESG평가지표 내 소비자안전·공급망 실사·인권실사 등 반영	복지부장관
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1-1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식 사과	(1) 대통령

□ 권고 내용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2017년 8월 8일 대통령의 사과가 이미 있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2)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2차례의 법 개정('19.2, '20.9)을 통해 피해 인정범위 확대, 구제급여 상향 등 폭넓은 인정과 지원 추진 중

* '22년 말 기준 4,572명 피해인정, 1,246억원 지급

-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호흡기 질환 발생 여부의 판정 체계에서 종합적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는 체계로 개편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안질환, 피부질환 등 모든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인정 여부 결정

- (금전적 지원 강화)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 지급 신설·상향

지원 항목	강화 내용('23년 기준)
장해급여	▸신설 (장해등급에 따라 약 40백만원~199백만원 일시금)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기존 약 40백만원 → 약 118백만원)
요양생활수당	▸등급 세분화(3개→5개) 및 지원금액 약 1.2배 상향

○ 법률지원, 의료지원, 군·학사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

-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민사소송대리('21~'22, 351명) 등 법률지원 서비스,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지원

-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13개소를 지정·운영하여 피해자·노출확인자 대상 생애주기별 검진 등 모니터링, 정신의학 검사 제공

- (군·학사지원)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의 진료·훈련 배려, 학생 피해자의 진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 시 출석 인정 등 지원(국방부·교육부 협업)

  *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으며, 국가는 구제와 지원의 책무를 가짐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피해자 지원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

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피해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3)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③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

- 더불어, 현행법상 인과관계 반증을 위해서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자(기업)가 증명하도록 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 관련법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 향후 계획

○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특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연구 등 지속 추진

1-3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연장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기 바랍니다.

※ 소관 변경 : 법무부 → 환경부(법무부, 소관부처 변경 요청, '22.9)

□ 이행 현황

○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연장은 특별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각 법무부 소관) 등 일반법을 개정하기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환경부 소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권고사항의 구체적 이행이 가능

○ 이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신고 위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위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 이행 위반 등

○ 다만, 적정한 공소시효(現 10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 보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

*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경우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됨

□ 향후 계획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전문가 검토(~'23.12)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소시효 연장방안 도출(~'24.12)

1-4 신속심사 대상 全 질환 확대 등 신속한 피해지원 실시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신속심사대상을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신속심사로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인정기준 마련이 필수이나, 현재 기준 마련이 가능한 질병은 제한적

- 신속심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질환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 신속심사를 거치더라도 질환의 악화 여부 검토, 피해인정 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개별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여 신속심사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개별심사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

○ 개별적인 인과를 토대로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피해를 판정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건강피해 조사기관 추가 확보 및 참여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심사 속도 개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누계) : ('20) 4,114명 → ('22) 4,274명 → ('23.9) 5,176명

□ 향후 계획

○ 신속한 건강피해 조사·판정을 통한 피해구제 및 지원 지속

1-5 「가습기살균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체제 개정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 항목 확대와 전국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

- 연령차별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 이행 현황

○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이며,

- 그간 2차례의 법 개정('19.2, '20.9)을 통해 피해인정 범위 확대, 구제급여 상향 등 폭넓은 피해인정과 지원을 추진 중

○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의 제한을 없애고, 장해급여 항목 신설 등 피해지원 항목을 확대하였음('20.9)

- 질환 치료 시 전국 병·의원 이용 및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중

○ 현재까지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간병비 지급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4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조사·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해 건강모니터링과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을 수행 중이며, 해당 사업에는 정신건강 관련 모니터링과 상담·진료도 포함*

* (심리상담 및 진료) 심리상담·검사(1차 지원), 정신의학 진료(2차 지원)를 병행

- 또한, 또래 관계 개선 및 심신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마음산책'(청소년 대상 진로캠프, 부모 대상 양육 및 의사소통 등), '힐링캠프'(명상, 미술심리치료 등)

**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중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리적 위험군을 찾아내고 상담·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시범운영('23.9월~)

○ 가습기살균제 정신건강 모니터링의 심리검사와 상담결과 등을 분석하여 대표적 호소증상에 대한 피해자 및 상담사용 안내서 개발(~'24)

1-7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행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재심사전문위원회는 호흡기내과·예방의학 등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환경보건·독성학·법학 분야 대학·연구기관 등의 재직자, 판사·검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구성 및 해당 명단을 공개 중

- 또한, 피해자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중

○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급신청자에게 지급 결정 사실과 조사·판정 및 심의 절차에서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함께 통지하며, 지급 결정 과정에서 수행된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내용도 함께 통지

○ 또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경우 성별, 연령, 질환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세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여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도 알 수 있도록 운영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8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 구성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추모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추모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와 같은 추모 추진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19.2)

-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관련 지원 신청 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 관련법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 **(법 제9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영 제14조의2제1항)**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 국가가 추모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모사업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는 현 체제와 같이 피해자단체 중심으로 추모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관련 추모사업 추진 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

1-9	디스커버리 제도 등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 도입	(1)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별 피해자의 경우 소송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증거절차)를 도입하는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사소송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민사소송법은 공정성이 가장 중시되는 절차법이며, 그 공정성의 핵심은 누가 당사자가 되든, 어떤 사건이 재판되든 간에 동일한 소송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임

- 민사소송절차가 특정 사건, 특정 당사자에게만 제도를 달리하여 적용된다면 절차의 공정성 및 당사자 간의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고, 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됨

○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일반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민사소송법 도입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전체적 체계 및 심리원칙, 소송절차의 공정성 및 효율성, 국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

- 아울러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방대한 자료 제출을 위한 비용 등 당사자의 비용부담 증가, 이를 악용한 불필요한 절차의 남용 및 이에 따른 절차 지연의 문제, 우리와 미국의 법 체계 및 문화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1 실증자료 생산시기 및 미실증 책임 규제 규정 도입 (1)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 권고 내용

○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간주하는 등 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생명, 신체 등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실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과제 선정: '23.2월, 기간: '23.5~10월)

- 국내외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표시광고법상 실증자료 생산시기를 명확화하고, 미실증시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안 등 연구('23.12. 결과보고 예정)

□ 향후 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시광고법 및 동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검토

1-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2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독분석실(7개소) 운영('16년~)을 통해 중독물질 성분을 분석·제공하고, 해독제 거점병원(19개소) 운영('15년~)을 통해 해독제를 비축·제공

* (중독분석실) ('16) 1개소 → ('19) 6개소 → ('23) 7개소

- 중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18년~)하여 해독제 및 중독분석 요청 및 접수, 해독제 사용법에 대한 정보 및 치료지원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을 통해 급성 중독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중

□ 향후 계획

○ 응급실 기반으로 급성중독환자 치료를 위해 해독제 추가구매·비축 및 실시간 재고 관리 구현 등을 위한 중독정보시스템 개선

○ 중독정보시스템 활용 지침 배포 및 응급의료기관 대상 시스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응급실 기반 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활성화

1-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2)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 043-219-2921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실태조사) 국가 중독센터 도입의 과학적 기반 확보를 위한 중독 조사·분석 운영체계 구축 및 심층 실태조사·사례분석 실시('22.6.~)

- 응급실 급성 중독 환자 대상 중독 심층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 바탕으로 환자 행태분석 및 위험요인 파악 등 원인분석 결과 도출

- 실태조사 대상지역 확대* 및 연중 조사 실시('23~), 사례분석 대상을 기존 사망사례에서 중증환자까지 확대('23~)

* ('22) 9개 시·도, 10개소(서울2, 경기·강원·충북·대전·전북·광주·대구·울산 각 1) → ('23) 14개 시·도, 15개소('22년 + 인천·충남·부산·경남·제주 각 1)

○ (예방사업) 중독질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사업안 마련,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배포 등 예방사업 실시

- 청소년 다빈도 노출물질 중심 중·고등학생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23.8.~12)

□ 향후 계획

○ 중독 심층 실태조사 전국확대(17개 시·도) 및 중독 예방사업 대상 확대, 중독센터 설립·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검토

1-13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52

□ 권고 내용

○ **국무총리**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형태의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목적·용도 등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개별 법령으로 관리* 중임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처리)제품 ▲(식약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농림부·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 비료·사료 등

- 제품 안전관리에 한해 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17.9,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산업부·복지부·환경부·식약처 등 12개 부처 참여,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필요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 등 협의

○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 관리·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행정위원회 설치는 광범위한 기능*, 그간 관리대상별 특성(제품별 유해정도 등) 및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관리제도를 차별화·분담해 온 현 관리체계의 효율성, 조직·예산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국가수준의 독성정보 연구·관리, 독성물질 및 위해성평가관리, 노출 피해 질환 관리 및 국가통합감시체계 설치·운영 등

□ 향후 계획

○ 독성물질 관리 등에 관한 범부처 협력 필요사항 조정·관리

* 범부처 행정위원회 설치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추진

1-14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부처와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내 화학물질 관리조직을 '화학물질관리본부'(차관급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로 확대하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를 '위해성평가부'로 확대하기 바람
-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화학물질청'이나 '통합 위해성평가기관'과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바람

□ 이행 현황

○ 권고 취지에 동의하나, 차관급 조직설립 등 대규모 조직 개편·확대는 정부조직관리방향과 행정환경 변화,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움

○ 다만, EU 화학물질청(ECHA)과 비교 시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 인력이 부족하므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인원 증원을 협의

- 그간 화학물질안전원('13)을 신설하고 화학안전과('15) 및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17) 하는 등 화학안전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

< ECHA와 우리부 주요 업무별 인력 비교(화학물질 등록 관련) >

주요 업무	ECHA (A)	우리부 (B)	차이 (A-B)
등록서류 접수·검토	60	38(과학원)	94
유해성·위해성 평가	72		
정보 관리	30	2(본부)	28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5	국가 독성연구 전담기관 등 마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1

□ 권고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수준에서 범부처 방식으로 독성을 연구하고 독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독성연구 전담기관 또는 국가 독성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안전성평가(연) 內 국가독성정책센터 운영 중('21.9~)

○ 국가독성정책센터, 독성정보포털(www.kitox.re.kr/doksa/) 구축·운영('23.5~)

- 독성·안전성 분야 관계법령, 정책·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공유

□ 향후 계획

○ 국가독성정보 플랫폼* 기획 및 유관기관 협력 논의 추진('24~)

* 디지털 기술로 수요자 맞춤형 독성 데이터 제공, 정부기관·산업계 등에서 독성 평가 등에 활용 기대

※ 범부처적 연구 데이터 축적·활용·제공을 위해 식약처, 환경부, KOBIC 등의 독성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방안 검토

1-16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화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본법) 법률의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바, 업계·시민사회 및 국회 등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선행 필요

- 현재 민·산·관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운영 중으로, 당해 포럼에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고려

- 다만, 권고 사항에서 제시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대다수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 ①화학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중
②이해당사자 상설소통협의체 구성·운영 → 화학안전정책포럼 구성·운영 중
③통합화학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계획

○ (상설소통협의체)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훈령 제1574호, '22.12.20.)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전문가 등)가 참여·소통하는 체계와 절차를 규정

- 이해당사자의 토론·의견수렴을 거쳐 '포럼 운영규정' 마련('22.7), 누구든지 토론주제·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22.8~)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소통하는 '상설소통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속 운영(수시)

1-17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16년부터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 매년 4개 지자체를 선정, '22년까지 총 28개소 지역대비체계 구축

○ '23년에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추진 중(4개지역)

* 지역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 지역대비체계 구축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무로 국가사무 추진은 곤란

- 용역사 선정, 착수보고(5.26) 및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7.4)

* '23년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4개소(원주시, 음성군, 함안군, 거제시)

- 거버넌스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활성화 방안 간담회(안전원, 3.8)

- 지자체 대상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작성 교육(안전원, 5.8~5.9, 38명)

□ 향후 계획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속 추진('23~)

- 각 지자체 방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사업 진행

- 지역대비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추진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검토

○ 거버넌스 구축·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 용역(화학물질안전원, '23년)

1-18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46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화학관련 법령별로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중

시스템명	근거법령	운영시기	운영내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9조	'05~	화학물질 등록.신고 민원처리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	'17~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관련 정보제공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안전법 제47조	'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 중장기적으로 국민 접근성 개선 및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계획 마련('23.1.30)

국정과제 68-5

▪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 OECD 표준 데이터형식 차용, 정부(범부처)·산업계·시민사회에서 활용

□ 향후 계획

○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12)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27)

1-19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46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관리를 위해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수집된 물질정보가 하위사용자나 각 부처 시스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화학물질 통합 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예정

○ 아울러, 유해성 정보의 확보 범위 확대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위해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추진('23, 60억원 정부안 반영)

*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운영현황 조사, 유해성정보 DB 구축·제공, 유해성 정보 작성·제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 향후 계획

○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12)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27)

○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23.12)

1-20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흡입 노출과 같은 위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제품등록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점관리물질)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용도·함유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화평법 개정, '24.1.4 시행)하여 중점관리물질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다만,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수량(현행 연간 1톤 초과)을 조정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국회*에서도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8.2)'

** (EU, REACH 규정) 고위해우려물질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초과한 경우임

○ (제품등록제 도입) 위해우려가 높은 흡입노출 위험제품은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에서 이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품등록제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이 있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 가습기처럼 흡입노출에 의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분사제형의 살생물제와 보존제의 경우 사용가능물질 목록(함량제한)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규정

□ 향후 계획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제도 시행('24.1.4~)

○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지정 고시* 개정 추진(지속)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1-21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시장감시 범위 확대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의 비관리품목 및 사각지대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감시 범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규정) 「화학제품안전법」 제7·8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후 위해성이 있는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제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

○ (현황)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확대*하였고, 기존 품목의 신규물질 추가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

* (품목 수, 누적) ('15.4) 8 → ('16) 18 → ('17) 23 → ('19) 35 → ('20) 39 → ('22) 43

□ 향후 계획

○ 위해성평가 등을 반영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 고시** 개정 추진('23.12)

* 흡입노출 高위해 가능한 방향·탈취제 지속방출형 제품의 안전기준 신설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확대(지속)

1-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 신설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보 미보고로 인한 피해 경중의 고려 없이 단순 미보고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벌칙 처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제품안전기본법」상 중대사고 보고위반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7조(과태료) 사업자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사고(사망·화재·폭발사고, 전치 4주 이상 치료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

○ 타법에서도 유사한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임

- 아울러,「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해성 등에 관한 보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과처분으로 벌칙조항 신설은 신중한 접근 필요

법률명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화학제품안전법」	새로운 위해성 등의 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제1항제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상사례의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7조제2항
「식품위생법」	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미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01조제1항제5의2
	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거짓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제2호
「약사법」	부작용 등의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8조제1항제7의7호
「의료기기법」	부작용 관리 의무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4조 제1호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2의2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3호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3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 활용 제품 관리체계 구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19

□ 권고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등 소비자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위해 제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관계 부처에 확대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 기반한 "온라인상품 제품분류체계" 마련중('22.5월~)

- (시범 적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부 관리 품목(전기·생활·어린이)에 대한 시범적용 실시(~'22.12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반영('23.4월)

< GS1* 의 GPC (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특징 >

* 국제적 표준화기구인 GS1(Global Standard #1)에서 제정한 제품분류체계

○ **(목적)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상품분류**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품분류체계

○ **(특징)** 4단계의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세분류에서는 연령, 위해성, 용도 등을 제품의 속성을 분류**하고 있어 **약 15만 개의 품목** 구분

❶ **소비자 제품에 대한 유통상품 분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류체계

❷ GS1의 기구에서 제공하는 공급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등의 **전세계 유통상품 정보공유 네트워크 서비스**(GDSN, GS1 클라우드)의 제품검색, 등록, 게시의 표준으로 사용

□ 향후 계획

○ 산업부 관리 품목(전기·생활·어린이)에 대한 시범적용 결과 보완(~'23.12월)

○ 품목 매칭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안) 마련(~'23.12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에 반영된 온라인상품 제품분류체계의 관련부처 확대 추진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1) 법무부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대한 검토

- 기업의 공급망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업실사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에 맞추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

- 참고로, 기획재정부 주재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23.5.)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중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업의 원료 수급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공급망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위해 모든 기업에 공급망 실사·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와 처벌 중심적 접근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특히, 화학물질 제조·판매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어 규제 부과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등도 감안할 필요

○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실사·공표는 현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제도 등을 통해 달성 가능

-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에 반영되어 추진 중

* (現) 자율적 운영 → ('25.~) 일정 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3)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본 권고 사항은 다수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법 제정에 대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향후, 해당 제도가 논의될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1) 법무부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간기업의 현실적 인권경영 실천 수준 감안

-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제도화의 경우, 현 단계에서의 우리 기업 현실, 기업 규모에 따른 인권경영 실천 수준 편차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 필요

○ 타 부처·기관 추진 정책 관련 통합적 고려

- 인권경영 평가·공시 관련 산업부, 금융위 등 타 부처·기관의 정책이 추진 중이므로 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1.1)의 경우, ESG 정보의 자율공시 활성화 및 '25년부터 '30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 필요

  * '23.2.21.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하에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등 참석)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업의 인권경영 강화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나,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의무 부과 등이 해당 취지 달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 작성주체와 내용 등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아울러, 기업의 인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에 반영되어 추진 중

* (現) 자율적 운영 → ('25.~) 일정 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3) 환경부장관

환경부 기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본 권고 사항은 다수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바, 향후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등이 논의될 경우, 환경·안전 등 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국민연금 ESG평가지표에 소비자안전 등 반영	(4)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3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국민연금의 ESG 평가에 산업별 특성과 기업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제품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지표 개선(52개 → 61개 지표)

* 「국민연금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20.10~12)하여,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평가결과를 고려하는 ESG 통합전략을 국내주식('20년~), 국내채권('21년~), 해외주식·채권('23년~) 대상으로 확대 적용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1) 법무부장관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533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유심증주의·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의 예외로 신중검토 필요

- 인과관계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일률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반함

-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민사법상 원칙으로, 법률로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

-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 식당에서의 식중독 발생과 같은 사건도 포함될 수 있고,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사업의 규모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당사자 간의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손해배상 청구인이 손해발생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민사법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현행 민사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충분히 예측하는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를 관장하고 있어, 중대시민재해의 손해배상 관련 권고를 직접 이행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3)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제조물 책임법」 등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일부 입법례는 존재

< 관련법규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노출 이후 질환발생 또는 기존 질환 악화, ③노출과 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이 모두 증명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①제조물이 정상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②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③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징벌적 성격의 법률로서,

- 원료·제조물 분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旣 반영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4)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손해배상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 소송상 인과관계 인정은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실관계 영역으로 법률로 일괄 추정하는 것이 민사법 체계에 적합한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분야 2 4.16세월호참사 분야(32개)

연번	권고사항	대상
1	▸ 세월호참사 관련 공식 사과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업무체계 구축	대통령
2	▸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수사 또는 감사 실시, 불법행위 발견시 고발 및 징계 요청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국조실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3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 방지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규정	국회의장 인사처장
4	▸ 기록물 고의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 제재 및 처벌 위한 「공공기록물법」 등 개정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5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	인사처장
6	▸ 사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운용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7	▸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전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국정원장
8	▸ 불법사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재정비 및 독립 감찰기구 도입	국회의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9	▸ 세월호지원단 총괄 역할 강화 및 장기지원계획 수립 등 피해지원 개선	국조실장
10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시까지'로 변경	해수부장관
11	▸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해수부장관
12	▸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및 구체적·전문적 교육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13	▸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 및 책임 이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해수부장관
14	▸ 선종·항로 고려 등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해수부장관
15	▸ 평가기간의 전문성 확보 등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개선	해수부장관
16	▸ 「해운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개정* * 운항관리 업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임을 명시	해수부장관
17	▸ 내항여객선사 자체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여객선 안전등급 평가 제도 등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18	▸ 내항일반선 분야 해사안전 감독관 인원 확충 등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해수부장관
19	▸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 * 선사 내 안전관리자 지정,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	행안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	▸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 개선	행안부장관
21	▸ 세월호참사 조사기구 권고 사항 이행 절차 및 결과 기록 등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 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22	▸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해수부장관
23	▸ 「선박안전법」 개정* * 선박 결함신고제도 관련, 신고주체 특정, 위반시 벌칙부여 등	국회의장 해수부장관
24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신고 절차 개선, 수집된 정보 선사 제공 및 교육 활용 방안 마련	해수부장관
25	▸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 공익신고센터 설립	해수부장관
26	▸ 조난 현장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실질적 수색구조 활동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27	▸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해양경찰청장
28	▸ SAR 안전감독관 운영 법적 근거 및 구조본부 운영 점검 기능 강화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29	▸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 내 세계해상 조난과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운용 및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해양경찰청장
30	▸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 일률적·정기적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31	▸ 수색구조 지휘관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등 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32	▸ 구조 자원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수색구조 민·관·군 간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장

2-1	세월호참사 관련 공식 사과 등	(1) 대통령

□ 권고 내용

○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뤄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고 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2017년 8월 16일 대통령의 사과가 이미 있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적폐청산T/F」를 구성하여 세월호참사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규명을 실시하였으나('17.6~12),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불법행위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음

○ 검찰 세월호 특수단('19.11~'21.1)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무혐의 처분('21.1.19)한 바 있음

○ 특히, 「사참委」 역시 국정원의 적극적 협조(자료 제출·직원 면담 등) 아래 불법사찰·조사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19.4~'22.2)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 바 있음

□ 향후 계획

○ 국정원 자체 조사는 물론 수년에 걸친 검찰 수사와 「사참委」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이에 따라 추가 수사감사 및 고발 징계 등 조치 필요성은 없어 보임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2) 경찰청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02-3150-0470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참위는 정보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인력부족, 경찰청의 '자료 부존재' 회신 등으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청 차원의 추가적인 독립조사를 요구

* (정보국 입장) 당시 정보경찰은 사회질서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연락과 같은 ①구조활동 지원 역할과 ②사후 피해회복 등 국민안전 관련 정보활동을 수행했다는 입장

- 세월호참사 당시 작성된 정보보고서는 모두 파기되어, 추가조사를 통해 세부내용, 첩보출처, 보고경로, 활용결과 등 사참위 조사결과 이상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3)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18년 「기무사 의혹 軍 특별수사단」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 당시 610 부대장 등 총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 그간 '사참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 이후 시간이 경과되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감사는 제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4) 국무조정실장

국조실 청렴법무팀 044-200-2845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국무조정실 대상 현장수사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20.5.13)

- 특수단 현장 조사 결과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특수단에서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21.1.19) 시 국무조정실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5)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감사담당관 044-200-5034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 차원의 자체감사를 실시('17.9~12)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여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 작성 여부 등

○ 자체 감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종결 및 조사활동 방해 의혹 문건* 확보 등 업무방해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 완료(검찰청 서울동부지검, '17.12.15)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15.1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임 장·차관 기소('18.2.19, 서울동부지검)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6)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044-205-1169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특조위 설립 방해 등 의혹 관련,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조사 실시 등 旣 조치 완료('20)

- 행안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후 형사입건 없이 종결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7)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안전예산과 044-215-7434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 조사 실시 등 旣 조치 완료('20)

※ 기재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후 무혐의로 종료되었기에 추가 조사 불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8) 법제처장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044-200-6553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법제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함) 구성 및 활동 당시, 관계 부처에서 요청하는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을 뿐임

- 또한 권고 대상인 다른 부처의 경우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법제처는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별도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별도의 조사 또는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사 또는 감사 실시 예정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9)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044-201-8144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인사혁신처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음('21.1.19)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 명령 거부권 규정 (1)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의견진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원발의안 2건 국회 발의·계류 중

* 기동민의원안('20.6.19), 전용기의원안('22.4.12)

※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에 관련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상임위 논의 결과 보류('18.3.23)

□ 향후 계획

○ 국회 발의된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대응(계속)

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추진 (1)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2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을 고의로 반복해 미등록 한 경우를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물의 등록은 공공기관 및 모든 공무원이 따라야 할 법정 의무사항이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 기록물 미등록 등의 행위는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점검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한 시정 및 예방 등이 가능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 공공기관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감사·점검 추진 및 시정요청·조치이행 관리 중
: 기록관리 기관 평가('22년 231개, '23년 242개), 공공기관 실태점검('22년 21개, '23년 39개), 지자체 기록관리 감사(245개)등

○ 또한, '기록물을 고의로 미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의원발의안(이형석 대표 발의, '22.10)에 대한 의견 조회 실시 결과*, 관계기관 등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재 국회 계류(행안위 법안소위) 중임

*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형벌 법규 강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의견(법무부 등)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5 공무원 교육과정에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 추가 (1)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인재개발과 044-201-8224

□ 권고 내용

○ **인사혁신처장**은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해, 그 위법성과 부적절성 등을 교육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공직가치 교육을 신규자 및 승진자 등 직급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및 시책교육에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안내

□ 향후 계획

○ '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에 안내

2-6 피해자 구제 위한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 등 마련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각종 소송·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국정원 역시 院의 불법적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의 본인 관련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을 경우, 공개 요청 문건과 관련한 △공개·비공개 등 검토 의견 △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 △청구인에 대한 공개·비공개 결정통지문 등을 회신하는 등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6 피해자 구제 위한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 등 마련 (2)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료제공) 현재까지 자료제공 요구는 없었으며, 개인 또는 집단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 요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제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제도·절차 등 마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6 피해자 구제 위한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 등 마련 (3) 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관리과 02-3150-1430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료 제공) 당시 작성된 정보보고서 등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임

*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 (절차 등 마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정보공개법 등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7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국가기록원 이관 등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약 68만 건 전체(목록 포함)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물 관리 원칙(제19조의2 무단 은닉 등 금지, 제27조 폐기 절차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세월호 관련 자료를 관리 중임

○ 국정원 생산 세월호 키워드 포함 대다수 자료가 참사와 무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감 정보여서 국가기록원 이관은 불가함

○ 이와 관련, 「공공기록물법」 제14조 역시 통일·외교·안보 정보를 생산하는 국정원은 생산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 설치한 특수기록관에 보관·관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국가정보원법」 개정('20.12.15)을 통해 국내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고 院 운영의 기본원칙(제3조)을 신설, 국정원법에서 정하는 정보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직무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또한,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제정('21.3.5)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정보활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부서별 업무환경에 맞춰 별도 지침·내규도 제정해 운영 중

○ 감찰부서에 독립적 직무감찰 권한을 부여 중이며, 별도 감찰 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2) 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관리과, 감사담당관 02-3150-1430, 047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규정 재정비) 경찰개혁위 권고('18. 4) 이후 '준법지원계' 신설*('18.7),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 훈령) 제정('19. 1) 등 현장점검·교육을 강화하며 준법의식 체질화를 위해 노력 중이고,

*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적법성 점검과 행정지도 및 사안에 따라 사실조사와 징계·수사 의뢰도 할 수 있어 부적절한 정보활동에 대한 실효적 조치 가능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 12),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21. 3)을 통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정보활동의 원칙 ·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준법 정보활동 기반 마련

○ (독립 감찰기구 도입) '10년부터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함으로써 자체 감사 · 감찰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 감사관실 직원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직 공모 및 적격심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선발 중

-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 제도를 도입('19.5)·운영하여 민 · 관 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실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3)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 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조직 해체)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기무사 융합정보실 해체('18.9)

○ (법제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3不(①정치 개입, ②민간사찰, ③특권의식) 조항 신설 후 지속 유지('18.9)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22.11.1.) 이후에도 3不 원칙 지속 유지 中

○ (독립적 감찰부서 운영) 국방부 감사관 및 방첩사 감찰실장의 독립적 감사권 보장

* 국방부 감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독립적 감사권을 보장하고, 방첩사 감찰실장은 '2급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 보완 완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9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1) 국무조정실장

국조실 세월호지원단 피해지원과 044-200-6304

□ 권고 내용

○ **국무조정실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의 총괄역할을 강화하고 전체 피해자 파악 및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지원단의 총괄 역할 강화) 현재 피해지원·추모사업 이행상황 점검, 관련 기획·조정, 관계기관 협업 지원 등을 旣 수행 중

* 가족단체-관계부처 간담회 정기(연 2회) 및 수시 개최, 유가족 의견수렴 및 소통('2012~)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계획 수립) 「분야별 피해지원 세부 추진계획('15.4)」 旣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18개 피해지원대책 중 생활지원금·긴급복지 지원 등 8개 대책 추진 완료

□ 향후 계획

○ (세월호지원단의 총괄 역할 강화) 향후 피해지원·추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체 등 운영 예정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계획 수립) 공동체 회복사업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지속 추진

* 피해지역(안산시·진도군) 경제 활성화,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2-10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의 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0-6264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참사 생존자의 치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상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 시까지'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등 74인 발의) 국회 계류 중

- (발의 내용)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 삭제

  * 상임위(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 및 의결(`23.6.26)

- 일부개정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을 치유될 때까지' 지원으로 '수정 수용'

  *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는 영구지원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 제시

<참고 : 관계부처 의견>

○ (복지부) 법 제정시 지급기간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지원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논의 필요

* 지원인원 및 지원예산 현황 : (`15) 579명, 827백만원, (`16) 210명, 154백만원, (`17) 92명, 53백만원, (`18) 345명, 1,409백만원, (`19) 370명 1,158백만원, (`20) 402명 1,242백만원, (`21) 397명 1,306백만원, (`22) 398명, 1,130백만원 ⇒ 총 2,786명, 7,279백만원

○ (기재부) 유사사례*와 건립중인 "안산마음건강센터**(`24년 下.준공)" 활용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 필요

* 제주 4.3사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사례의 경우, 관련 피해자 의료지원비는 일시금으로 旣 지원한 바 있음

** (주요기능) △ 정신·신체질환 치료, △ 건강검진, △ 트라우마 고위험군 발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 △ 트라우마 교육·연구 등

□ 향후 계획

○ 고영인 의원 등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입법절차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 대응

2-11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사들의 구조적 운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내항여객선의 안전 운항 담보 및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선원안전임금 지원, 선박 수리 및 운항 관리 지원, 선박수리비, 운항관리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이행 현황

○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2.9~'23.4)

- 선원 근로시간 및 숙소 여건 개선, 역량강화, 선박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포함하여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방안 검토

* 국가보조항로는 선원임금을 국가가 전액 보조 중이며 일반 내항여객선원 평균 임금 대비 높은 수준인 바, 주로 원격지 숙소 확충 및 근로시간 개선방안에 집중

○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기관위탁(공영제)하기 위한 방안 수립('23.9)

○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 담보 및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2년 연속 적자 항로 등 안전운항 지원이 필요한 항로를 대상으로 선원인건비, 선박수리비, 안전관리비 등 결손액을 국가가 지원 중

- 또한 내항여객선 안전이라는 공익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운항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 중('22년 정부지원율: 41.6%)*

* 다만 운항관리에 대한 선사의 책임성 확보 및 사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액 지원이 아닌 부분 지원

□ 향후 계획

○ 국가보조항로 운영 공영화 지속 추진

2-12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사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사안전법」 제58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15조의12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 및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하도록 규정

- 또한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21조는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규정

○ 「해사안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확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 등 실시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5년 주기)

□ 향후 계획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관련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24)

*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 준수 의무

2-13	안전관리책임자 권한·책임 근거 마련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를 재검토해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항관리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록 관리, 내부 심사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 근거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을 「표준운항관리규정*」 제10조에 규정 완료

*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 준수 의무

○ 운항관리규정 이행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교육내용 추가토록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21.7)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4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개선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법」등에 따라 시행되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를 재검토해 여객선 선장별 상이한 선종·항로 등을 고려한 적성심사 내용을 담도록 보완하고,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권고 내용을 반영한「선원법 시행규칙」개정 완료·시행(7.14)

- (주요내용) 적성심사의 선종·항로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성심사 위원에 해당지역 항로 및 여객선 전문가인 '운항관리자'를 포함

□ 향후 계획

○ 적성심사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보완하기 위한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매뉴얼' 개정안 마련(~'23.12)

2-15	「해운법」상 고객만족평가제도 개선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재검토해 서비스 부진 선사나 중·하위권 선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제도의 홍보 활성화,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결과 정보 등의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참사로 강화된 안전 점검 관련 모니터링 평가 조사원의 교육 강화, 평가위원의 관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 계획' 수립('22.12)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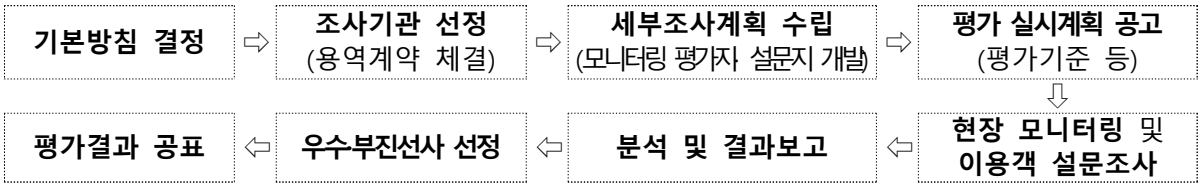

○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2회), 설문조사(1회) 등을 실시할 민간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기술평가 등 실시('23.1~3)

* (평가 기간) '23.3~'23.11(9개월),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 권역별 선사 설명회(4.5.~13), 누리집 공고(4.26) 및 보도자료 배포(4.28)를 통한 제도 홍보, 승선 모니터링 평가 조사원 대상 사전 승선교육(5.16.~18)

□ 향후 계획

○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평가('23.4~11)

○ 부진사업자 대상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검토(12월) 및 고객만족도 서비스 개선 교육('24.1)

○ 여객선사별 평가 결과를 언론 및 누리집 등에 대국민 공표(12월)

2-16 「해운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 비용을 여전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조항이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저해 요소로 확인되는 바, 「해운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은 법령을 개정해 운항관리 업무가 선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명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취지) 관계법령상 운항관리를 포함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안전관리는 선박소유자가 수행할 고유업무로 선사의 운항관리 부담 필요

* 당초 각 선사별 독자적인 운항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를 구축하고자 운항관리자를 두고 소요비용을 분담한 구조로 현재도 변동없음

- 이미 운항관리자의 소속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부담금 규모와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독립성 확보

* 운항관리자 비용은 수지차보전 예산으로 기관경비에서 우선 지출된 후 부담금 수입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일선 운항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은 운항관리가 선박소유자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사업자 안전의식 제고에 필수적*

* 별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①운항관리업무는 사업자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오인을 야기할 수 있고, ②선사의 안전개선노력 없이 비용부담만 폐지되는 결과

○ (제도 적정성) 「2022 부담금운용평가 보고서」 결과*, 본 부담금은 부과목적이 유효하고 중복·유사성이 없어 존치 권고

*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으로 편익을 얻는 내항여객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부분을 부담시키는 부담금 방식이 적절하고, 조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으며, 행정 제재적 성격을 지닌 벌금·과태료 혹은 사용료 등으로 전환할 수 없음"

○ (타 교통수단과 형평성) 내·외항 상선 및 버스·철도·항공 등은 부담금과 국고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항관리 등 안전관리 수행

- 국내 사례(내·외항 상선 및 버스·철도·항공) 및 해외사례 상 운항관리 업무는 사업자 고유 업무로 국고지원 사례가 없는 점 고려*

* 연안여객선사가 자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영세하고 안전관리 실패에 따른 사고 영향이 큰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60% 이상 국고 지원 중

〈 안전관리체계 국내사례 〉

구 분	내항여객선	내항화물선	외항선박	항공기	철 도
법 령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	항공법	철도안전법
안전관리 주체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운항관리자(국고지원)	선사 (운항관리수행+ 안전관리책임자)	선사 (운항관리수행+ 안전관리책임자)	항공사 (안전 및 운항관리사)	철도공사 (안전 및 운항관리사)
지도감독	해사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선박검사관	항공안전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비용부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 안전관리체계 해외사례 〉

구 분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법 령	해운법	해상운송법	상선법(내항여객선) 규칙2001	미국연방코드 제463202항
안전관리 주체	선사(안전관리책임자) 운항관리자(국고지원)	선 사 (운항관리자)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 사 (안전 및 운항관리사)
지도감독 주체	해사안전감독관	운항노무감리관	MCA(해안경비국) 검사관	USCG(해안경비대) 검사관
비용부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 향후 계획

○ 부담금의 사업자 안전의식 제고 효과, 타 교통수단 부담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신중 검토 필요

2-17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 권고 내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능을 갖춰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객선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소관 변경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부

□ 이행 현황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 평가를 포함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격년 시행 중(「해운법」 제9조)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활동 평가 결과를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등 정책지원 선정 시 활용 중이고,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조치완료 시까지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바 '고객만족도 평가' 등 제도로 갈음 가능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8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인된바, 내항일반선 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의 인원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양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분야에 감독관제도 도입과 해양수산부 관리 밖 영역에 해당하는 유선·도선 및 수상 레저기구 등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다중이용 선박 분야에도 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에게 해사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선박의 화물에 대한 독자적인 개방검사 권한을 갖게 해 내항선 지도·감독 점검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사안전법」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내항여객선 18명, 내항화물선 20명, 원양어선 2명으로 구성('15년 34명→ '16년 36명→ '18년 40명)

- 원양어선을 제외한 어선에 대한 해사안전감독은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제2항 및 「수상레저안전법」제29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분야의 안전관리는 해경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도 행안부 및 해경 소관(19번 과제와 동일)

○ 해사안전감독관은 매년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해사안전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 개방 점검이 가능함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지정·운영 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업체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직무범위,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유·도선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연구용역('17.9~'18.1)"을 통해 개정안 마련

- (추진경과) '20.7월 국회 제출(정부 발의), '20.11월 행안위 소위 회부(계류 중)

□ 향후 계획

○ 안전감독관 제도는 안전관리자 지정제도 도입·운영 이후에 성과 분석을 통해 검토 추진

2-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549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법령소관) 행정안전부

○ (추진경과)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개최결과에 따라「유선 및 도선 사업법」일부 개정안 발의

*「유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해경청-행안부 TF회의 2회 개최('18. 4. 12. / '18. 5. 25.)

<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해경청-행안부) 개최 경과 >

연번	개최일자	주요내용	참석자
1	2018. 4.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상황 등	해경청(3) 행안부(2), 협회(3) 등 10명 내외
2	2018. 5. 25	유도선업 일부개정안 이견 의견토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사항 공유 등	해경청(2), 행안부(3), 해수부(3), 지자체(4)

- 안전관리자 지정 관련,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 중('20.11,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 향후 계획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행안위 소위 계류 중('20.11)으로, 행안부와 심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조 추진

2-20 선박건조지원제도 선사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도선 현대화 선박건조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재조정 또는 민간금융기관과의 이차보전 관련 사업 협약시 대출 조건, 계약내용 등을 유·도선 사업현황을 고려해 재조정 등을 포함한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의 선사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노후선박 건조지원을 위한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추진 중('20~)

- '20.12월 4척 ⇒ '21.12월 8척(누계) ⇒ '22.12월 19척(누계) 등 선사 참여 지속 증가

○ 선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11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지원 강화 (5개 협약은행, KOMSA, 조선조합 등)

- 대출 상담, 선박설계, 건조검사 관련 자문, 조선소 알선 기타

○ 실질적 건조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신설·도입('22.7)을 통해 참여율 제고 추진 중

- 특례보증 시행 이후 대출시행 및 이차보전사업 참여 선사 대폭 증가('22년말 기준, 신용보증서 발급 건수 : 9개 선사 10척)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1 대형재난 선박에 대한 자료 준영구 보존 조치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참사를 조사했던 한시적인 국가조사기구의 권고사항이 갖는 실행력과 이행 여부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의 선박에 대한 자료와 검사 결과등의 기록이 폐기되지 않도록 정부 대행기관과 같은 책임기관의 해당 자료들은 보관 기간의 만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4~5항

- 해당 권고사항의 주체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 법령에서 권고내용 이행과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력과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대형 재난선박의 자료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조치 완료('22.12)

- 선박검사 정부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선박의 검사기록, 검사결과 등에 대한 보존기간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하도록 조치 완료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선급 및 뷰로베리타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2 외국 도입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노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최초 운항 시점 또는 최초 등록 시점과 이후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선령 기준과 상관없이 최초 도입 시 수행되는 정기검사를 포함해 최소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연안여객선 선박검사는 해외 도입 중고선박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 중

- 선박검사를 통과한 외국 도입 선박에 대해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여야 할 기술적 근거가 없으며,

* 외국의 경우 선령제한 관련 규정이 없고 선박검사를 통해 안전 확보

- 외국 도입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 제한 적용 시 수입제한 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법 저촉이 우려되므로, 중장기 검토 필요

○ 도입 선령을 10년 내로 제한하기보다는 정기 및 중간검사 등의 철저한 검사로 국내 건조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내항여객선의 선령별 검사 종류》

구분	검사종류	검사시기	관련규정
선령 20년 이하	(별도)건조검사	건조 또는 도입 시	선박안전법 제7조
	정기검사	매 5년	선박안전법 제8조
	제1종 중간검사	매 1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선령 20년 초과 25년 이하	정기검사	매 1년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선령 25년 초과 30년 이하	정기검사 +피로강도평가 등	매 1년	
	선박관리평가	매 1년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3	「선박안전법」 개정안 마련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 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선박 결함신고 제도와 관련, 신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해 동 조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에 규정돼 있는 신고 주체의 특정 및 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선박안전법 개정 완료('15.1)

- 세월호 참사 이전 결함신고의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참사 이후 신고를 의무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임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 개정('15.1.6)

- 선박소유자·선장·선박직원에 결함 미신고시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하여 신고주체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11호 신설('15.1.6)

※ (기존) 선박 결함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칙 규정 없음 → (개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규정 신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4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40)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의 표준운항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고 절차를 사용자 편의에 맞는 방식으로 검토·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정기적으로 선사들에 제공하고 선박 운항 관련자를 교육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선박안전법」의 표준운항관리규정 내 준해양사고 통보 권고 규정(신설안 제28조의2) 마련 완료('23.4.4)

○ (신고절차 개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21.12~)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반응형웹) 內 준해양사고 통보 게시판 활용

○ (정보제공과 교육 활용) 선박운항자 등이 통보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훈사례를 선정·공표(매분기)하고 선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5	별도의 공익신고센터 설립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 선박의 기계적 결함과 선박 소유자·선장·선원 등의 의무와 관련된 신고는 해수부 산하 지역 항만청 등에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능동적 신고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를 설립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신고자 공개금지 규정과 온라인 신고센터 마련으로 능동적 공익신고 제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별도 공익센터 설립할 필요성이 낮음

-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법령 및 처벌 : 「선박안전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공익신고자 보호법」(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별도 공익신고센터 설립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 온라인 결함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방문 또는 서면 제출 등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누구나 쉽게 결함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

  * 결함 신고자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21.9~)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6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34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대응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 관서의 특성을 고려해 조난현장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할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고 본청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규칙 개정) 광역-지역구조본부의 명확한 임무 및 역할 분담과 광역구조본부 중심의 상황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관련규칙* 개정 진행 중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257호)

► 개정 방향
· 지방청 중심의 중요상황대응과 이에 따른 광역-지역구조본부의 역할조정과 광역구조본부의 현장 지휘 지정
· 각급 구조본부의 담당 사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임무 중복 예방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

○ (상황처리 개선) 중요상황 발생 시 광역구조본부(지방청장) 중심의 상황 대응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는 상황처리 개선방안* 시행

* '23년 2월 「전남 신안해역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상황대응 분석·평가

< 상황대응 분석·평가 주요 개선사항 >	
► (광역구조본부 중심 상황대응) ① 신속한 세력동원, 기관간 협조 등 효과적인 대응·지휘를 위해 중요상황은 광역구조본부장이 지휘	즉시 시행

□ 향후 계획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3년 5월 중	'23년 5월 말	'23년 6월 중	'23년 11월 말	~'23년
소속기관 의견수렴	개정초안 마련	의견조회 및 수정보완	행정규칙 개정절차 진행	개정안 발령

2-27 수색구조 활동의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34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법」과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수색구조 활동의 총괄·조정을 위한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지휘·조정체계 재정립) 「수상구조법」 제17조*는 수색구조 현장 지휘는 구조본부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제17조(현장지휘) 조난현장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행함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구조본부장은 구조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관이 수색구조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

* 제5조(비상가동 조직 및 사무) - 구조본부장 : 구조본부업무 총괄
- 조 정 관 : 수색구조업무 총괄

- 수색구조활동의 총괄·조정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을 위해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개정 방향
· (구조본부장) 수색구조업무 등 수난구호활동 총괄 지휘·조정
· (조 정 관) 구조본부장 보좌 및 구조본부 운영업무 총괄

□ 향후 계획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계획 진행 중

'23년 5월 중	'23년 5월 말	'23년 6월 중	'23년 11월 말	~'23년
소속기관 의견수렴	개정초안 마련	의견조회 및 수정보완	행정규칙 개정절차 진행	개정안 발령

2-28 SAR 안전감독관의 구조본부 점검 기능 강화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34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SAR 안전감독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SAR 안전감독관에게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구조본부를 비롯한 다른 구조본부장이 지휘권을 인수하지 않은 채 현장지휘에 관여하는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구조본부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SAR 지도감독 계획수립)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매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 중

*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운영) 제3항제8호 광역·지역구조본부의 지휘·감독

** 수색구조과-1423('23.3.13)호「23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 보고」

■ **SAR 안전감독관 기본교육 실시**('22. 5. 11 ~ 13)

■ **SAR 안전감독관 관련 본청주관 교육 및 정기점검**

- (교육·지도) '23. 6월 1주 ~ 3주 기간중 소속기관별 1일 이상

구 분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소속기관	동해청, 제주청	남해청, 서해청	중부청

- (정기점검) '23. 6월 ~ 12월 전 지방청 및 소속서(소속기관별 1일 이상)

○ (현장지휘 사례 조사) 구조본부 비상가동시 상급구조본부장의 지휘권 미인수 현장 지휘 사례 조사 등 SAR 안전감독관 기능 강화를 위해

- 「23년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의 「구조조정본부 점검」 항목에 지휘권 미인수 현장지휘 사례 조사 항목 추가 반영

- 매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 수립시 점검 항목 정례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9 실시간 육·해상통신망 체계 구축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032-835-2401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본부와 현장 출동세력, 조난선박 간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간 직접 교신하기 위한 통신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에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 설비를 설치·운용하고, 상황실 통신망을 지능형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통신망과 연계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모든 구조본부가 조난 선박과 직접 교신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旣 설치 완료) 구조본부 상황실에 GMDSS 통신설비 운영 중

- 현재 모든 구조본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여 현장세력과 직접 교신 가능(상황문자시스템, 경비 전화 등을 이용한 교신도 가능함)

- 본청 종합상황실의 국제안전통신센터는 GMDSS장비를 이용, 24시간 조난통신을 청취, 통신권역 내의 조난선박과 직접 교신 가능함

○ (통신망 구축) 해양경찰청과 e-Nav 간 통합커뮤니케이션(UC)* 연계를 통한 구조본부-조난선박 간 교신 가능 통신체계 구축('23.4월)

* LTE-M 통신망 내 선박과 선박, 선박과 센터 간 문자·음성·영상 통신을 지원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0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40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색구조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해경의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해양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구조·구급직별 전문교육) 전문 구조대원의 구조역량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구조 전문교육 및 구조 상황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20~)

* 최근 3년간('20~22년) 전문교육 14개 과정 운영, 1,111명 교육

○ (수색구조 담당자 교육) 사무실, 함정, 파출소 등 수색구조 업무담당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을 위한 긴급구조교육과정 개설 운영('19~)

* 최근 3년간('20~22년) 긴급구조과정 5개소, 1,702명 교육

○ (구조대원 자체양성교육) 일반직원 대상 구조대원(구조직별) 양성 교육 과정 신설 운영('16~)

* 최근 3년간('20~22년) 자체 양성과정 26명

○ '23년 구조·구급 교육훈련 기본 계획 의거 매년 정기적인 전문교육 운영 및 확대 예정

- '22년 총 44회, 1,158명 → '23년 총 67회, 1,221명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1	지휘관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238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를 총괄·지휘·조정하는 모든 지휘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지휘관 교육) '23년 해양경찰 교육훈련 계획에 「상황지휘과정」반영·시행

- 기간/대상 : '23. 2. 22(수) ~ 24(금), 3일간 / 총경(승후포함) 15명

- 교육내용 : 상황지휘의 이해, 유형별 상황관리(수색구조, 경비·작전, 해양오염방제 등), 사회재난대응정책, 언론대응 기법, 대외 리더십 등

* 관련근거 :
- 해경청 교육훈련담당관-81(23.1.4)호 "2023년 해양경찰 교육훈련 계획"
- 해경청 교육훈련담당관-955(23.2.16)호 "2023년 총경급 「상황지휘과정」 운영 계획 알림"

** 매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 정기적인 전문과정 운영 예정

○ (지휘관 역량검증) 총경·경정 기본교육에 수색구조 관련 교과목을 보강하여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총경은 경력과 상황처리능력 등 감안하여 「서장 직무수행능력 심사」 후 지휘관 배치

- 심사시기·대상: 1년 1회, 서장 보직 대기자

- 평가내용: 지휘관 역량 및 리더십 등 종합 평가 후 서장 배치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2	수색구조 시 민·관·군 협력 강화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24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 시 민·관·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이 보유한 구조 자원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조지원단체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관·군 구조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①민간 구난업체·해군 보유 구조장비 현황 파악 및 D/B 관리 중이며, 민간구조대원 선박의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하도록 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운용 중('22.12) ②지방청·소속서 주관 수난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중(분기별)

* ('23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 지방청, 경찰서별 반기 2회 이상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민간구조지원단체 지원) 해양구조·구난 민간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 민간구조대원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20년 ~)

-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수상구조법령」 개정을 통해 동원수당 인상('23.2)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 제정 추진 중*

* 윤재갑('22.10월)·이달곤 법률안('22.11) 발의, 입법공청회 개최('23.4), 법률안 농해수위 법안 상정 및 심사(~'23.12)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분야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22개)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1	▸ 독립·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인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2	▸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안전/재난)으로 분법 추진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3	▸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재난관리 중심으로 전환, 안전분야는 부처별 추진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4	▸ 안전정보 연계를 위한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5	▸ 재난피해자를 위한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국무총리
6	▸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인권위원장
7	▸ 피해자(가족)에게 수습·수색 정보제공 법제화 등 수습홍보 개선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8	▸ 구호 약자의 범위 법제화 등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개선	행안부장관
9	▸ 재난회복 개념 명시하고 무형의 피해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복구 개선	행안부장관
10	▸ 동원·봉사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 강화를 위해 재난법, 의사상자법, 수상구조법 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 명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복지부장관 해양경찰청장
11	▸ 재난 추모사업 법제화 및 매뉴얼 마련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12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	행안부장관
13	▸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매뉴얼 등 표준절차 개선	행안부장관
14	▸ 선박사고시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지휘공백 해소 방안 마련,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에 반영	해양경찰청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15	▸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	행안부장관
16	▸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매뉴얼 개선 등 재난심리지원 강화	행안부장관
17	▸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정신건강복지법」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장 복지부장관
18	▸ 손해배상시 남녀 형평성, 만12세 이하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 책정	법무부장관
19	▸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교육기관 역할 개선	교육부장관
20	▸ 재난안전법에 재난피해자 법률지원 규정 신설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21	▸ 가습기살균제, 4·16세월호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필요	국가기록원장
22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방안 마련	국가기록원장

3-1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조사과 044-205-62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고려사항) 재난원인조사의 주 목적을 고려할 때, 부처별 조사기구 중심 조사 체계 유지 필요

- 재난원인조사는 수사 등과 달리 재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이 주 목적이므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함
- 또한 복수 기관이 관련된 대형·복합 재난 발생 등, 필요 시에는 행안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일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를 따로 두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음

○ (대안이행) 행안부는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 내용과 같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한 바 있음('23.6.27)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등 구성 시, 민간 전문가의 단장 선임과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다른 법령에 근거한 타 부처 조사기구에 대해서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난안전법」 근거 재난원인조사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신설('23.8.18)

□ 향후 계획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 및 민·관 합동조사 지속 추진(계속)

○ 재난원인조사기구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관계기관 협의(계속)

3-1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2)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당 없음

□ 향후 계획

○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음

3-1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3)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0-625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당 없음

□ 향후 계획

○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음

3-2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가진 법 체계적·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을 기본법인 '안전기본법'과 집행법인 '안전관리법' 및 '재난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재난안전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취지와 중앙부처·지자체·소방·해경 등 다양한 재난대응기관과 재난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법 법체계 개선 정책 연구 실시('22.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재난안전 법제정비 TF』 구성·운영 추진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재난안전법 체계 개선과제를 세부 과제로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법령 정비 추진 중

* (종합대책 과제 30) 재난안전관리 법령의 체계적 정비

○ 재난대응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체화를 위한 법제연구 용역 착수

※ (연구기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 '23.6.19~12.15

□ 향후 계획

○ 법제연구 결과에 따른 법령정비(안) 마련('24. 상반기)

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1) 국무총리

국조실 안전정책과 044-200-2348

□ 권고 내용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분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04년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합하여 수립(1~4차) 중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분리할 경우 복합적 대형재난의 통합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재난안전기본법 법제정비와 연계한 종합적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2)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7

□ 권고 내용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분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수립하고 있음(4차 기본계획: '20~'24)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분리할 경우 복합적 대형재난에 대한 통합적 대응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안전기본법 법제정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 추진

  * (사참위 권고:재난피해지원 일반-2) 재난안전기본법 분법 등 정비

○ 현재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제5차 기본계획('25~'29)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

□ 향후 계획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3.4~11)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24. 상반기)

3-4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65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연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6)

- 효율적인 안전정보* 수집·공개·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신설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건수,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등급), 지역별 재난관리평가 결과 등

○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6회)

- 원데이터 제공 확대, 자료수집방식 개선, 서비스 발굴 등
- 기관별 데이터 보유현황 조사 협조요청 등
- 재난안전분야 데이터 공유 추진 방안 및 활용사례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추진계획 협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

○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로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3.8.8) 및 운영규정 신설('23.9.8)
-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구성·운영
- 정례회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 향후 계획

○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23.10)

3-5 재난 피해자 지원 조직 신설 및 지원체계 마련 (1) 국무총리

국조실 재난안전관리과 044-200-2348

□ 권고 내용

○ **국무총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의 수습,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추진

-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의 본부장이 되어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조정하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 행사

* ▲코로나 19('20.2.23~) ▲이태원 참사('22.10.30.~12.2. 총리 주재 16회)

○ 이태원 참사('22.10.29) 발생 시에도 중대본 의결을 통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성('22.11.9)하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행안부)'을 설치('23.3.4~)하여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조직과 인력운영 및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중대본 의결을 통해 피해 규모 등에 따른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또한, 이태원 참사 수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상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조직 운영 지속

3-6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등 (1)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02-2125-9946

□ 권고 내용

○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실태를 조사·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 인식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조사('22. 11, 문체부 주관) 진행

  *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1,209명 실시, 응답자의 14.5% 오프라인에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 온라인 24.4%경험

-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재난피해자 혐오 대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권고하는 것을 결정('23.3),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문 발송 완료('23.5)

  * (가이드라인 제2장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안전관리계획 등을 작성하는데 차별적 표현, 비하적 표현 등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우울적 표현, 권위주의적 표현 등은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재난·참사 피해 유가족 등과의 간담회 개최('23.3.16),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포함한 혐오표현 현안대응을 위한 간담회('23.8.9), 및 회의('23.9.18) 개최

  * 간담회 등을 통해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모니터링, 재난과 관련한 공무원 교육 및 재난 구조 및 처리 관련 행동 지침 마련 등의 과제 발굴

○ 교육 및 홍보 강화

- ’23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교육 과정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의 예방과 평등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23년 연중)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혐오.차별 교육현황

연도	과정명	대상	특강명	시간	횟수
2023년 (8.31.까지)	지자체 인권담당자 인권역량 과정	전국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실무자	인권이슈 차별금지와 혐오표현-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2시간	1회
	아동정책 공무원 인권리더십과정	아동정책 담당 공무원	혐오와 차별	2시간	1회
	노인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연수과정	노인 인권 교육가 역량강화 연수과정	노인 차별	2시간	2회
	2023년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전국 초중고 학교 교장, 교감	평등법의 이해	2시간	13회
			학교 내 혐오차별 사례 발표 및 토론	4시간	8회
	2023 인권강사 양성과정(기본1)	신규 인권강사 과정 지원자	평등과 차별	2시간	2회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혐오표현을 중심으로-	2시간	2회
2022년 (10.1.부터)	2022 인권강사 양성과정(심화)	신규 인권강사 과정 지원자	혐오와 차별	2시간	2회
	2022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위촉 인권강사	사회갈등과 불평등	2시간	4회

* 혐오표현의 개념과 현상(재난피해자 혐오표현 현상 등), 차별과의 관계, 혐오표현 대응방법 등(평등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 혐오 문제”등을 공모주제로 하여 2023년 인권공모전 추진

* 작품(포스터, 영상) 접수, 심사 및 시상(2023. 9. 26.) 후 당선작 영상제작 유튜브 송출, 홍보용 인쇄물로 제작 배포, 향후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 예정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 노력 요청(’22.11.7)

□ 향후 계획

○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행 모니터링

○ 혐오표현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계속)

3-7	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방안 마련 등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재난대응정책과, 수습지원과 044-205-412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참사와 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원인 및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획득하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등에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열람하고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임무, 전담체계구성 등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피해자 중심의 재난수습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재난현장에 중앙부처 수습지원단을 파견토록 규정을 신설(「재난안전법」 제14조의2)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한 정보 제공, 피해가족 전담공무원 지정 등 재난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14.12)

- 지자체장이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규정을 개정(법 제16조제3항)하고, 현장민원실 운영, 의료·장례지원 등 재난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

* 행안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2019.)

○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행동매뉴얼 강화

- 재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동 매뉴얼 개선사항 마련('22.11월)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이재민,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및 유가족 지원, 임시 또는 합동 분향소 설치 등에 관한 조치 내용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사항 신규 반영

○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재난수습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을 통해 지원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권고사항의 취지를 달성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부상자·유가족 지원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 향후 계획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 보완

-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등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

* (종합대책 과제53)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3-8 구호 약자 명시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책 개선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32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구호 약자 범위를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총괄부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책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23년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구호약자 지원내용 명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구호약자 우선 지원 및 임시주거 시설 내 구호약자 배려대책 마련

※ 휠체어, 시각장애인 전용 구호물품 확보, 편의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 등

- 요양 및 심신 안정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에서 임시주거 할 수 있도록 조치

○「재난구호법 시행령」의 '구호약자' 범위에 대한 구호기관·구호지원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를 통해 법제화 검토 추진

*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신체질환 등으로 인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구호대상을 '구호약자'로 규정하고 있음

□ 향후 계획

○「'24년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의견수렴 시, 구호기관·구호지원기관 및 재해구호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구호약자 지원사항들을 파악하여 수립지침에 반영(~'23.11)

○「재난구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구호기관·구호지원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추진('24년~)

3-9 재난회복 개념 명시 및 무형의 피해 기준 추가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지역의 실효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하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항목에 추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안전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 피해에 대한 일상 회복' 개념을 명시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5.16) 및 시행(9.15)

○ 재난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하는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23.2.24 ~ '23.12)로 추진 중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유·무형의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내용 포함)

□ 향후 계획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 추진현황 점검 및 실무 협의(수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등(10월)

3-10 정신적 질환 등 구호인력의 치료지원 및 보상 강화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8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 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안전법에 자원봉사 인력 치료비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치료비 지원 가능

○ 「재난안전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개정안 발의('22.11.2, 안철수 의원)

- 행안위 소위 회부('22.11.16),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23.2.21)

현행	개정안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 ---------- ---------- ---------- ---------- ----------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 ---------- ---------- ---------. ---------- ----------.

○ 안철수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개정 동의의견 旣 제출(행안부 → 국회)

○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반영 검토 요청

□ 향후 계획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3-10 정신적 질환 등 구호인력의 치료지원 및 보상 강화 (2)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 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행 「의사상자법」에 의한 의상자 부상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을 이미 포함하여 판정 중

- 구조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급~제5급으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 중
- 또한, 부상 정도가 악화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부상 등급 변경 신청 가능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0	정신적 질환 등 구호인력의 치료지원 및 보상 강화	(3) 해양경찰청장

해경 수색구조과 032-835-2147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 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신질환지원) 「수상구조법」은 「의사상자법」을 준용,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금과 치료 지원 가능

* 수난구호종사자 및 수난구호참여자는 「의사상자법」이 준용되며 부상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 포함(1~5급으로 분류)

- (지원현황) 현행 「수상구조법」에 의거 세월호 구조작업에 동원된 민간잠수사의 정신분야 치료에 대해 지원 중임

* '19~'22년 정신의학 진료 27건 지원

- (전문지원체계 마련)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수상구조법」에 따라 운영중인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정신의학 전문의를 위촉하는 등 정신건강 의료지원 기반 마련('2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준용) 국가의 종사명령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취지 등에 맞지 않으며, 현행 의사상자로서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해당 없음

3-11 국가의 재난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매뉴얼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재발 방지 등 교훈 계승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의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을 명시하고 추진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 관련 법령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16년)

* ①「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3호라목(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및 [별표]제2호라목(추모사업 비용 부담기준)
②「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 지침」[별표]제2호4·5(정부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실시 요령, 추모사업 실시요령) 등

○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매뉴얼 마련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23.2.24 ~ '23.12)로 추진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희생자 추모사업 관리방안(가이드라인)' 내용 포함)

□ 향후 계획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추진현황 점검 및 실무 협의(수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등(10월)

3-12 특별재난지역 관련 생활안정자금 형평성 제고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거주자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재난안전법」제66조제4항 :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운용 중으로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

*「시·도/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시·도/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도/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호(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먹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생략) 2. 간접지원: (생략) 3. 피해수습지원: (생략)	제4조(지원기준)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이하 생략)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3	대규모 재난수습 총괄체계 개선 등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대응총괄과 044-205-5212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수습의 총괄체계를 개선하고 「범정부통합실무반」 운영방안과 피해자 전담지원체계, 피해자보호공간 및 임시영안소 운영 등 지원업무절차를 마련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대규모 재난수습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수습지원단 운영매뉴얼」에 피해자 지원 임무와 역할, 기능 및 지원활동수칙 등을 포함하여 수립 완료('21.9)

-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
- 피해자 가족과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지원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동향 파악 등 실시
- 수색 진행 상황 등은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대기실내 상황판 설치
- 피해자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일반사항, 장례지원, 보험 등)

○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지원, 임시·합동분향소 설치 등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매뉴얼 지침* 시달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을 통해 관계기관 배포('22.12)

□ 향후 계획

○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발표) 추진을 위해 매뉴얼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및 이행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1) 해양경찰청장

해경청 수색구조과 032-835-214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위기관리 매뉴얼」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 후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 : 해수부)'에 반영 예정

* 해양선박 재난대응 정책협의회('22.11.30, '23.3.30, '23.9.25 등)
행안부(주관), 해수부, 보건복지부, 해경청, 경찰청, 소방청 등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에 반영할 예정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2)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위기관리 매뉴얼」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 후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 : 해수부)'에 반영 예정

* 해양선박 재난대응 정책협의회('22.11.30, '23.3.30, '23.9.25 등)
행안부(주관), 해수부, 보건복지부, 해경청, 경찰청, 소방청 등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에 반영할 예정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3)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43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위기관리 매뉴얼」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상자 육상인계 관련 현장지휘 공백방지와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조치 명확화를 위해 행안부 주관 「해양선박 사고 표준매뉴얼(해수부 주관, 행안부 승인)」의 개정방안을 해수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

* 행안부 주관 해양선박 재난대응 정책협의회 개최('22.11.30, '23.3.30, '23.9.25)

논의안건	논의결과	협의결과
① 사상자 육상인계지점 지휘공백 문제	‣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에서의 지휘총괄에 관한 사항은 부처간 이견으로 의견조정중	협의 진행중
② 대규모 인명사고 상황단계 구분 및 조치	‣ 해경에서 수색구조지침서 및 선박사고 표준대응절차와 복지부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뉴얼 작성 및 인명구조 활동 실시	완료
③ 사상자 유형별 후속조치 구분	‣ 육상인계지점에서의 인계후 1차 구조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며 이후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주관기관인 복지부에서 후속조치 및 사상자 명단 작성 실시	완료
④ 사상자 및 전체 피해자 명단의 작성 인계 총괄기관		완료
⑤ 현장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 절차	‣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육상인계지점 지휘 부처와 관할 보건소에서 협의 후 추진하며, 출입통제와 신원조회는 경찰청에서 추진	완료

□ 향후 계획

○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의 개정사항 등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매뉴얼 수정 예정

3-15 체계적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 매뉴얼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33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양 관련 부서 협의)

□ 이행 현황

○ 「'23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내용, 범위 등의 예시를 포함하여 수립 반영

* 진료(응급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호약품 제공 등

○ 지역보건소 의료서비스 제공현황 및 가능 목록 취합(3.20~3.31)

※ 8개 지자체 현황 제출(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향후 계획

○ 재해구호 의료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마련하여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반영(~'24년)

3-16 심리적 응급처치 등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 |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42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재해구호법 시행령」과「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명시하고 재난상담 활동계획 수립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재난 시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심리적 진단'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에 부합하게 '심리적 응급처치'로 개정 추진 중

※ '심리적 응급처치' 용어 사용의 혼선 방지를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 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등 용역 실시 중

○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수립 후 시·도 배포('22.12.26, 완료)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소방청, 해양경찰청 포함(완료)

○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훈련 사전 실시 및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인도주의적 활동원칙, 피해자 보호수칙 등 명시(완료)

□ 향후 계획

○ 심리적 응급처치 가이드 개발 용역 추진(~'23.12.20)

○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개정('24)

3-17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실화 규정 마련 (1)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 피해자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이태원 참사 이후 지침('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을 통해 지역사회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을 명문화('23.1.)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재난 심리지원 기능 지원을 위해 인력 522명 증원('23)

□ 향후 계획

○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심리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 인력 지정 및 교육·훈련 강화 추진

3-18	군미필·아동 관련 배상금 형평성 개선안 마련	(1) 법무부장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 군미필 남성의 일실수익 산정에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은 향후 성장 과정의 후유장해와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군미필 남성) 현행 국가배상액 산정 방식이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 중임

○ (후유장해) 법원은 '후유장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현행 법령 하에서도 만 12세 이하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향후 계획

○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 예정

3-19 재난대응·피해지원·추모 등 교육기관 역할 개선 | (1) 교육부장관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 권고 내용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계획과 매뉴얼에 반영하고「학교구성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안전법」에 '학교구성원에 대한 추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계획 관련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23.2.)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개정 추진 중('23.2)

※ 행안부 검토회의(2.27) → 교육부 개정초안 제출(3.13) → 행안부, 개정안 통보(4.20)

○ 학교 재난 트라우마 심리치료 지원 매뉴얼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23.2.) 및 워킹그룹 운영('23.4~)

○「학교안전법」 개정 관련

※ 행안부「재난안전법」개정(국가의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학교안전법」개정 여부 검토

□ 향후 계획

○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계획(체계) 마련 및 매뉴얼 개정('23.12)

○「학교구성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마련 등('23.12)

3-20 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1) 행정안정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배·보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재난안전법 규정 신설 필요성 검토

- 재해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합동으로 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운영하여 그간 11회 지원

※ 법무부 법률지원단 운영사례 : ('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 ('17년) 여수수산시장 화재, 인천소래포구어시장 화재, 포항 지진 ('19년) 고성·속초지역 산불, ('20) 코로나19 ('22)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수도권 등 집중호우 등

- 재해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정부차원의 법률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기에, 재난안전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법률구조 전담기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 향후 계획

○ 재해재난 피해자에게 충분한 법률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계속)

3-21 대형참사·재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1)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66

□ 권고 내용

○ **국가기록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대형참사 및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18.7.~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 조치 실시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폐기금지 재요청('21.8.~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장활동 종료 시점)을 통한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완료

□ 향후 계획

○ 향후 국가적 대형참사 및 재난 발생 시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검토

3-22 참사·재난 및 조사 관련 기록물 공개·활용 (1)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031-750-2047

□ 권고 내용

○ **국가기록원장**은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제도 개선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물의 등록 및 서비스 제공('18년~)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3,582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625철)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물의 이관(~'23.1월) 및 정리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자·비전자기록물(7,415철)*

* '2023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등록완료(~'23.12월) 후 서비스 예정

□ 향후 계획

○ 특히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물과 같이 국민관심도가 높은 기록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록물의 경우 이관·등록 완료(~'23.12월) 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 공개·활용* 추진

* 국가기록원에 이관 및 등록이 완료된 공개기록물은 열람, 콘텐츠 구축·확산, 온라인 서비스(검색, 원문공개 등), 전시 등 대국민 서비스* 중